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드론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89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과 현 준

목 차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2200489)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1
Ⅲ. 주요내용	2
Ⅳ. 검토의견	4
1. 총괄검토	4
가. 드론의 개념	4
나. 드론 기체 및 드론산업 현황	10
다. 드론 관리 제도 및 인프라	15
라. 드론 관련 현행 법 체계	22
마. 제정 필요성 여부	25
바. 제정안의 체계	29
사. 국토교통부 의견	32
2. 주요 항목별 검토	33
가. 목적(안 제1조)	33
나. 정의(안 제2조)	36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50
라. 군용드론 등의 적용 특례(안 제4조)	51

마. 국가기관 등 드론의 적용 특례(안 제5조)	55
바. 드론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60
사.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안 제7조)	64
아. 드론기술기준(안 제8조)	67
자. 무선설비 등(안 제9조)	70
차. 안전활동(안 제10조)	71
카. 사고보고(안 제11조)	76
타. 안전자율보고(안 제12조)	81
파. 사실조사(안 제13조)	84
하. 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안 제14조)	85
거. 드론보험 등의 가입의무(안 제15조)	88
너. 드론 안전성 관련 인증(안 제16조)	91
더. 드론 비행규칙(안 제17조)	93
러. 무인비행장치 신고 및 비행승인 등(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 ...	96
머.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안 제24조)	108
버.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명의대여 금지 등(안 제26조부터 제38 조까지)	112
서. 보칙(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122
어. 벌칙(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127
저. 부칙	133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220048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14.

다. 회 부 일 : 2024. 6. 17.

II. 제안이유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

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도치 않은 드론 불법운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드론안전 확보를 위해 기체, 통신기술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드론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나.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라.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마.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바. 「항공안전법」 내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

사. 「항공사업법」 내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합병·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I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드론의 개념

「항공안전법」(2016. 3. 29. 제정, 2017. 3. 30. 시행)에서는 비행체의 종류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나누고 있음. 드론은 비행체의 한 종류로서 통상 비행체 중 무인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이후 2019년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2019. 4. 30. 제정, 2020. 5. 1. 시행)에서는 “드론”을 법적으로 정의하였음.

즉 현행법령 상 “드론”의 개념은 「항공안전법」에서 항공기 중 무인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정의하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무인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그 밖의 항행 비행체를 “드론”으로 정의하는 방식임.

【 드론 개념 관련 현행 법령 규정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드론의 범위)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제정안은 “드론”에 대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르도록 한바, 동법에 따르면 드론의 정의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①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②무인항공기가 해당됨.

또한, 기술개발 추이나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비행체를 규율하기 위하여 해당 “드론”의 정의에 ③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¹⁾도 포함하였음.

현행법령에 따른 비행체의 종류와 드론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다목의 해당 비행체는 향후 기술개발 추이, 시장변화 등에 따라 개발될 비행체(예 : eVTOL, 수직이착륙기)를 규율하는 정의 규정임.

【 비행체의 종류 】

구분	종류(분야)	사진	개념	무게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비행기		공기보다 무거운 고정익 항공기로서 엔진을 통해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으로 양력을 활용	최대이륙중량 600kg ↑
	헬리콥터		수직축에 장착된 로터에서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하는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600kg ↑
	비행선		공기보다 가벼운 엔진으로 구동하되 방향 조종이 가능한 항공기	자체중량 180kg ↑
	활공기		엔진보다 자유비행에서 얻는 양력으로 비행하는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	자체중량 70kg ↑
	무인항공기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비행기(항공안전법 §2제6호)	·비행기·헬리콥터형: 자체중량 150kg ↑ ·비행선형: 자중 180kg ↑
경량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비행기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하여 비행 중 양력을 얻는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600kg ↓
	헬리콥터		항공기보다 좌석, 속도, 추진방식, 무게 등이 작은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시동은 엔진, 비행 시 양력은 로터, 추진력은 프로펠러에서 얻는 회전익항공기	
	동력패러슈트		패러글라이더에 엔진과 조종석을 장착한 동체(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고 좌석·무게가 요건에 부합하는 고정익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1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행글라이더		체중이동 또는 날개를 조종(타면조종)하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2호)	자체중량 70kg ↓ (비상용구 제외)
	패러글라이더		발로 이착륙하는 조종자가 탑승하는 날개에 연결된 하네스로 구성된 초경량비행장치	자체중량 70kg ↓ (비상용구 제외)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4호)	-
	무인 비행 장치 무인동력 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5호 가목)	자체중량 150kg ↓ (연료제외)
	무인비행선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무인비행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5호 나목)	자체중량 180kg ↓
	회전익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6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동력비행장치를 갖춘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7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낙하산류		항력을 통해 낙하하는 사람(물체)의 속도를 늦추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8호)	-

자료: 국토교통부

즉 드론은 무게와 기체의 종류에 따라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및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로 구분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드론의 하위 종류 비교 】

구 분		내 용	관련 규정
드론	무인항공기	정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범위: 150kg 초과, 발동기 1개 이상(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초과, 길이 20미터 초과) 종류: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멀티콥터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무인비행장치	정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범위에 해당되는 무인비행장치 범위: 150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이하, 길이 20미터 이하) 종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 5호
	원격·자동·자율 등 비행체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자료: 항공안전사업법 초경량비행장치 드론분야 분법 (드론안전법) 제정연구(2020),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11쪽.

참고로, 드론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표현한 현행 법령 상 개념도는 다음과 같음.

【 현행 드론의 범위 개념도 】



자료: 항공안전사업법 초경량비행장치 드론분야 분법 (드론안전법) 제정연구(2020),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12쪽.

나. 드론 기체 및 드론산업 현황

1) 드론 기체 및 조종자 현황

2024년 6월 기준 등록된 드론은 60,581대로, 사업용은 38,339대, 비사업용은 22,242대가 등록되어 있음.

【 드론 기체신고 현황 】

용 도	구 분 ²⁾	최대이륙중량별 기체신고 현황					소 계
		250g 이하	250g 초과 2kg 이하	2kg 초과 7kg 이하	7kg 초과 25kg 이하	25kg 초과	
사업용	무인멀티콥터	574	22,022	1,965	8,624	4,140	37,325
	무인비행기	-	61	179	143	58	441
	무인헬리콥터	-	9	40	39	432	520
	무인비행선	-	1	-	45	7	53
	소 계	574	22,093	2,184	8,851	4,637	38,339
비사업용	무인멀티콥터	-	-	2,587	6,795	7,304	16,686
	무인비행기	-	-	3,333	890	14	4,237
	무인헬리콥터	-	-	1,204	62	41	1,307
	무인비행선	-	-	-	5	7	12
	소 계	-	-	7,124	7,752	7,366	22,242
합 계		574	22,093	9,308	16,603	12,003	60,581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 6월 기준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141,27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2) 각 구분별 기체는 다음과 같음.

【 드론 조종자격 취득현황 】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5.	합계
무인비행선	12	9	4	-	-	7	30	2	2	3	5	2	76
무인비행기	52	9	-	-	-	6	14	28	977	224	225	149	1,684
무인헬리콥터	-	606	205	454	461	95	70	68	471	221	223	131	3,005
무인멀티콥터	-	606	205	454	2,872	11,291	14,713	13,574	26,746	26,253	26,612	13,179	136,505
합 계	64	1,230	414	908	3,333	11,399	14,827	13,672	28,196	26,701	27,065	13,461	141,270

※ 무인동력비행장치(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 4종 자격 제외된 취득 현황

※ 무인회전익비행장치는 '17.3월 부터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로 분리

※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자격 취득자의 경우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 자격 모두 부여됨

※ 4종 온라인교육 이수자 : 439,850명('21~'24.6.)

자료: 국토교통부

2) 드론산업 현황

드론산업은 항공·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센서 등 첨단기술의 융합산업으로, 군사용에서 취미·촬영용 등 민간 부문으로 성장 중임.

드론이 안전진단, 감시·측량, 배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나라마다 미개척시장인 사업용 드론 시장³⁾을 선점하



자료: 국토교통부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취미용(소형)은 성능 한계로, 군사용(대형)은 고가(高價)로 인하여 사업

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또한, 대형 무인항공기의 등장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의 자율비행 드론 상용화 등 수송·교통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분야이기도 함.⁴⁾

국내에서도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쇼, 고화질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 중이며, 관련 유망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드론 관련 핵심부품기술과 국내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8대 핵심 부품 기술과 국내 수준 비교 】

핵심부품	비교기술	최고기술훈	국내
프로펠러	고효율 프로펠러 설계 및 카본 성형·제작	미국	90%
동력전달장치	소형·경량·고정밀 기어 설계·제작	독일	52%
소형엔진	소형·경량 100마력급 터보 샤프트 엔진 개발	미국	80%
전기식 작동기	고정밀 제어 및 소형·고기동 선형 작동기 설계·제작	미국	50%
비행컴퓨터	초소형·초경량·고신뢰성 H/W 및 S/W 통합 개발	미국	75%
관성항법장치	초소형·초경량·고신뢰성 항법장치	미국	75%
탐재안테나	고정밀 ·고속추적·고감도 패치형 안테나 설계 기술	미국	75%
통신장비	고신뢰·대용량·고속통신 및 소형·경량화 기술	미국	60%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2021 산업기술수준 조사의 차세대 항공 분야를 기반으로 분석한 드론과 관련된 기술수준

용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임. 드론시장(레저+상업용)의 90% 이상은 상업용이며, 상업용 드론시장의 분야별 규모는 활용(79%) > H/W(16%) > 소프트웨어(5%) 순임.

4) 정부 전자정부 정책브리핑, 드론산업 정책DB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190>

및 기술격차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최고기술국(미국) 간 기술 상대 수준은 약 72.0%, 77.9%, 73.7% 수준이고, 각 2.5년, 2.3년, 2.3년의 기술 격차로 분석되었음.

【 차세대항공 기술의 대분류별 기술 상대기준 분석 】



【 차세대항공 기술의 기술격차 분석 】



이에 정부에서는 드론산업의 적극적 육성(2022년 기준 드론산업 규모 9,804억원→ 2032년 기준 3조 9,000억원)을 목표로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 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하였고, 해당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작·형식 증명, 인증 등 제작기준, 기체·사용사업체 등록, 비행규칙·기준 등 운항관리, 비행공역 지정·운영, 자격증명·교육·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음.

【 드론산업 관련 각 부처 소관사항 】

(국토부) 제작·형식 증명, 인증 등 제작기준, 기체·사용사업체 등록, 비행규칙·기준 등 운항관리, 비행공역 지정·운영, 자격증명·교육·보험적용

(산업부) 응용기술·부품개발 등 R&D, 표준산업규격 등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창업·육성 지원

(과기부) 주파수 분배·운영 및 전파인증, 원천·공통기술 개발 등 R&D, 공공혁신 조달지원 등

자료: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다. 드론 관리 제도 및 인프라

1) 드론 관리 제도

상술한 바와 같이 드론의 개발-인증-자격취득-비행승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운영 등 드론산업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드론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

구분	설계·제작/신고·등록		승인/인증	사업운영/시설관리	폐기/휴·폐업
드론 기체	설계·제작	→ 신고	안전성 인증검사 (항공안전 기술원)	정기·수시검사 사업개선명령 안전개선명령 (공단, '22.12) 드론사용사업 변경·합병·상 속 양도/양수 (공단, '22.12)	기체 변경·말소 신고 (공단)
드론 사업자	시설 설치	→ 등록	사업 등 안전관리체 계 최초승인 (공단, '22.12)		드론 사용사업체 휴업·폐업 신고 (공단, '22.12)
	사업자 자체	드론 사용사업등록 (공단, '22.12)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단)			

종 사 자	자 격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교육/훈련 (교육기관)	→	필기시험 (공단)	→	실기시험 (공단)	→	면허발급(공단) 취소/정지 (국토부)
		교관 과정 (지도조종자)	교육/훈련 (교육기관)	→	조종교육교관과정(3일, 이론교육·평가) (공단)			→	교관등록/정지 (공단)

구분		설계·제작/신고·등록			승인/인증	사업운영/ 시설관리	폐기/ 휴·폐업
		교관 과정 (실기평가 조종자)	교육/훈련 (교육기관)	→	실기평가과정(1일, 실기교육·평가) (공단)		→ 교관등록/정지 (공단)
	공공교육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 임무특화교육과정 운영 (공단)					

안전 정보	드론 비행승인 (지방항공청)	드론 사고신고·조사 (경찰청, 지방항공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드론 보험이력관리 (공단)
----------	--------------------	--	-------------------

* 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뜻함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취득과 관련하여,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제122조5)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장치를 관리하고 있음.

다만, 완구용과 저위험 장치는 신고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으며, 사업용 드론은 모두 장치 신고가 필요함.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하고 있음.⁶⁾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5)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변경신고가 필요함.⁷⁾

드론의 조종자격은 「항공안전법」 제125조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으로 불리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함. 다만, 드론의 조종자 증명 취득은 완구용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고 위험도가 있는 드론에만 요구되며,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1종~4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 및 연습, 필기와 실기평가가 필요함.

한편, 조종자 양성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제126조⁹⁾에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7)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8)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9)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을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드론 비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는 「항공안전법」 제124조¹⁰⁾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에는 구역별 구분에 따라 비행승인을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비행제한구역에서는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 외 구역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고도 150m 미만에서의 비행은 비행승인을 요구하지 않음.¹¹⁾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하 생략)

10)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1)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또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등록제로 운영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드론 관련 제도 】

구 분		기체분류별 운영요건					관련법령
		완구용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기체분류기준 (최대이륙중량)		250g이하	250g초과 ~ 2kg이하	2kg초과 ~ 7kg이하	7kg초과 ~ 25kg이하	25kg초과 ~ 자중 150kg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조종 자격	종류	불필요	4종	3종	2종	1종	○ 항공안전법 제125조
	교육	불필요	온라인 교육·평가	이론교육 + 조종연습 (6시간)	이론교육 + 조종연습 (10시간)	이론교육 + 조종연습 (20시간)	
	자격 취득	불필요	온라인 교육·평가	필기평가	필기+실기평가		
전문교육기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서 전문교육기관 운영자의 지정 및 관리					○ 항공안전법 제126조
장치 신고	비사업	불필요		신고필요			○ 항공안전법 제122조
	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은 모두 장치신고 필요					
안전성인증		불필요 (사용사업 여부와 무관)				인증 (2년1회)	○ 항공안전법 제124조
비행승인		○ 비행제한구역은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 그 외 지역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고도 150m 미만에서의 비행은 비행승인 불필요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 8항에 따라 군 관할공역은 국방부장관이 비행승 인을 위임받아 시행				승인필요	○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은 모두 사업등록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					○ 항공사업법 제75조

자료: 국토교통부

2) 드론 관련 시험장 등

현재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지원을 위하여 12개의 시험장, 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운영 중에 있음.

2024년 6월 기준 드론 인프라 10개소를 준공(비행시험센터 6개소, 자격센터 2개소, 교육센터 1개소, 개발시험센터 1개소) 후 정상 운영 중이고, 인증센터(인천, ~'24), 복합인프라(고창, ~'26)를 구축 중임.

【 드론 관련 인프라 현황 】

인프라 시설	내용	장소
드론 비행시험센터 (6개소)	드론 기술개발 및 비행시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통제센터, 정비고, 이착륙장, 레이더, 주파수분석기, 영상추적기 등 시험장비 구비	(운영)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인천 서구, 경기 화성, 경북 의성
드론 자격센터 및 교육센터 (3개소)	드론 조종자격시험, 조종 교육을 위해 평가장비, 시설 등 구비	(운영) 경기 시흥, 경기 화성, 경북 김천
드론 복합인프라	드론 조종 자격·교육, 비행 시험, 시험장비 시설 등 구비된 복합 인프라	(구축중) 전북 고창
드론 인증센터 및 개발 시험센터	드론 안전성인증, 부품개발 시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 장비 및 시설 등 구비	(운영) 드론 개발시험센터 (고성) (구축중) 드론 인증센터 (인천)

자료: 국토교통부

라. 드론 관련 현행 법 체계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¹²⁾

동법에는 드론을 포함한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군용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항공기기술키준, 항공안전활동, 항공안전 자율보고, 사실조사,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조종자 증명 등이 규정되어 있음.

「항공사업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¹³⁾ 동법에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명의대여 등의 금지,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드론 활용의 촉진

12)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기반조성, 드론 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법임.¹⁴⁾ 동법에는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드론산업 실태조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 시범사업구역 및 드론첨단기술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드론 관련 현행법 규정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초경량비행장치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 3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3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제2조(정의) 4. 초경량비행장치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제2조(정의) 1. 드론 2. 드론시스템 3. 드론산업 4. 드론사용사업자 5. 드론교통관리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2조(수수료)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74조(청문)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84조(과태료)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제14조(인증등의 의제)

1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4조(청문)		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제136조(수수료 등)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166조(과태료)		제20조(청문)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22조(수수료 등)
		제25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항공 관련 법률의 드론 관련 내용의 개정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99년 8월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항공법」의 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은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업법」으로 이관되었음.

이후 각 법률에 드론 안전에 관한 인증기준 개편 등의 사항 및 보험 가입 대상 확대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왔으며,

2019년 4월에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방안과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1999. 8.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 관련 규정이 최초 도입
- 2016. 3. 「항공법」 분법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내용은 「항공안전법」으로, 사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업법」으로 이관
-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에 드론 안전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제도들을 지속 도입
 - * (항공안전법) 인증기준 개편('16.7.), 기체실명제 및 자격체계 개편('21.3.), 특별비행승인제도 신설('17.11.) 등 지속적인 제도 및 규제개선
 - * (항공사업법)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16.7.), 보험가입 대상 확대 ('20.12.) 등
- 2019. 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발전 기반마련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료: 국토교통부

마. 제정 필요성 여부

개발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되어온 드론은 최근 영상촬영, 농업, 레저 등 활용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으며, 드론산업도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드론의 안전관리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론 관련 현행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국민이 관련 법령을 파악·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드론이 대중에게

빠르게 보급되는 상황에서 법령의 복잡하고 분산된 구조로 인하여 드론의 운용 실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음.

또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 관련 법령은 유인 비행체 중심의 항공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계의 규제 혁신 요구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다양한 형식이 출현하는 드론 비행체를 현행법령에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음.¹⁵⁾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17~2026)에서 드론 교통관리(UTM: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체계의 본격 운영, 미래형 드론 등 시장 증대에 대응하여 드론의 안전관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¹⁶⁾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제정안은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에 산재한 규정을 통합하여 드론 규정의 국민 이해도 제고와 산재된 드론 관련 법규 연계·간결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15) 드론의 중량과 크기뿐만 아니라, 드론에 탑재된 장비 및 기술(영상촬영장비 탑재, 원격/자율/자동비행 가능, 드론의 타비행체 및 장애물 식별능력 등), 성능(운항고도, 속도, 운영시간), 비행 범위 가시권/비가시권, 항공안전 위험 등의 측면을 고려한 규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임.

16) 관계부처 합동, 2017.12.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17~2026), 43쪽.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드론의 안전관리, 드론 기술기준, 드론 식별장치, 안전활동·보고, 안전성 인증과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 안전과 사업관리 사항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제정안에서 대부분의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제정안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중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 조문내용의 변경 없이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즉, 드론 규정의 국민 이해도 제고와 산재된 드론 관련 법규 연계·간절화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나, 신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비행체를 법적으로 수용하고 산업 패러다임에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같이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담는다면, 드론에 특화된 내용의 법률로 제정된 현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을 담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바, 제정안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 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동 제정안은 드론 전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정안에서 드론 중 무인항공기에 관하여는 규율 내용이 미흡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바, 후속입법을 통해 무인항공기에 대한 미비를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바.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총 6개의 장(章)과 48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로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과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제정안의 조문 중 기존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아 신설된 조문은 총 5개로, 안 제8조(드론기술기준), 안 제9조(무선설비 등), 안 제12조(안전자율보고), 안 제17조(드론 비행규칙), 안 제24조(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임. 이들 조문은 「항공안전법」에서 항공기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문을 본따 드론에도 동일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들임.

【 제정안의 조문 체계 및 현행 항공 관련 법률 규정 비교 】

* : 신설 규정

제 정 안	현 행 법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제1조
제2조(정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제2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군용드론 등의 적용 특례)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5조(국가기관등 무인드론의 적용 특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6조(드론관리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공안전법」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항공안전법」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제2장 드론 안전관리	
제8조(드론기술기준)	「항공안전법」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제9조(무선설비 등)	「항공안전법」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운용 의무)

제 정 안	현 행 법 규 정
제10조(안전 활동)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제11조(사고보고)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조(안전자율보고)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제13조(사실조사)	「항공안전법」 제60조(사실조사)
제14조(주류 등의 섭취 · 사용제한)	「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15조(드론보험 등의 가입의무)	「항공안전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16조(드론 안전성 관련 인증)	「항공안전법」 제20조~제25조(형식, 제작, 감항 등), 제30조(수리·개조승인) 및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7조(드론 비행규칙)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제3장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종사자 등	
제18조(무인비행장치 신고)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9조(무인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20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및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23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24조(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항공안전법」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및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제25조(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장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	
제26조(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 등)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
제27조(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28조(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계획의 변경 등)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29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항공사업법」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30조(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양도 · 양수)	「항공사업법」 제34조(항공기 사용사업의 양도·양수)
제31조(법인의 합병)	「항공사업법」 제35조(법인의 합병)
제32조(상속)	「항공사업법」 제36조(상속)
제33조(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의 휴업)	「항공사업법」 제37조(항공기 사용사업의 휴업)
제34조(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의 폐업)	「항공사업법」 제38조(항공기 사용사업의 폐업)
제35조(서류 등의 비치)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36조(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항공사업법」 제40조(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 정 안	현 행 법 규 정
제37조(개선 명령)	「항공사업법」 제39조(사업개선 명령)
제38조(과징금 부과)	「항공사업법」 제41조(과징금 부과)
제5장 보칙	
제39조(청문)	「항공안전법」 제134조 및 「항공사업법」 제74조(청문)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41조(수수료 등)	「항공안전법」 제136조 및 「항공사업법」 제72조(수수료 등)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공안전법」 제137조 및 「항공사업법」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 칙	
제43조(무인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44조(검사 거부 등의 죄)	「항공안전법」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45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사업법」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및 「항공안전법」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46조(양벌규정)	「항공안전법」 제53조(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	「항공사업법」 제84조 및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항공안전법」 제16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동 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여,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97호,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91호,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으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한 제명, 동일한 내용의 제정안(「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15239호,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2022.4.13.)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사. 국토교통부 의견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법령을 유인 비행체 중심의 항공법에서 분리하여 국민이 알기 쉽고, 찾기 용이하게 관련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나, 무인비행장치와 운용 특성이 상이한 무인항공기 등 새로운 비행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하여 무인항공기는 국가 간 비행도 예상됨에 따라 항공기에 준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기체 중량에 따른 운용방식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대형드론에 해당하는 무인항공기는 제정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형드론에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주요 항목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드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목적)는 목적 조문으로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드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야 함.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규율하는 ‘드론의 관리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드론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 및 제3장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종사자 등에 관련된 사항이고, ‘드론 관련 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장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안 제1조 목적규정은 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고 보임.

다만, 안 제1조 목적규정은 전반적인 드론 관련 사항을 요약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내용은 드론의 종류 중 무인비행장치 관련 사항에 치중되고, 무인항공기와 그 밖의 드론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본 계획 수립 등 한정적인 범위로 규율하여 제정안의 내용과 목적규정 간 차이가 있음.

안 제2조제1호 드론의 정의에 따르면 드론은 ①「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②「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③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를 뜻함.

그런데 제정안은 제2장에서 드론기술기준, 안정활동, 안전자율보조, 드론 안전성 관련 인증 등 드론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 제3장 및 제4장에서 총 21개 조문에 걸쳐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무인항공기와 그 밖의 드론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해당 법률의 해석지침이 되는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전반적인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달리, 제정안의 내용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율하고, 기타 드론의 종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체계 균형성의 관점에서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드론의 목적, 성능,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위험도 측면에서 현행법령으로는 적절한 관리가 힘든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출현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 즉 드론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인비행장치에만 한정된 제정안의 규율체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동 제정안과 같이 전반적인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추후 무인항공기 등 무인비행장치 외의 드론 종류에 대한 미비를 후속 입법을 통해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의 적용 대상을 ‘드론’으로 규정함에 따라 중소형드론과 함께 무인항공기도 포함하고 있는데, 무인항공기는 국가 간 비행도 예상됨에 따라 항공기에 준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안전·사업 규정 일원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대형드론에 해당하는 무인항공기를 제외한 ‘중소형드론’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나.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드론사고”란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드론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드론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드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드론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라. 드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산피해 3. “드론안전위해요인”이란 드론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안 제2조(정의)는 정의규정으로, 드론, 드론사고, 드론안전위해요인, 드론사용사업자,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음.

①드론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드론의 종류를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등 3가지로 구

분하고 있음. 참고로, ③은 향후 개발될 비행체(예: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Landing), 전기 추진 수직이착륙기¹⁷⁾)를 규율하기 위한 정의임.

【 드론의 정의 관련 현행 규정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드론의 범위)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항공안전법」

17) 수직이착륙기의 대표적 형태는 다음과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현행법령에 따르면 드론 중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무인항공기로 한정되고, 초경량장치에 해당하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범주 내에서 용도(사업용, 비사업용)와 무게에 따라 구분되며, 그 구분기준에 따라 드론의 등록, 인증과 같은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항공기의 종류와 제정안의 대상인 드론의 종류(표에서 붉은 점선으로 표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현행 항공관련 법령 상 드론의 종류 】

구분	종류(분야)	사진	개념	무게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비행기		공기보다 무거운 고정익 항공기로써 엔진을 통해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으로 양력을 활용	최대이륙중량 600kg ↑
	헬리콥터		수직축에 장착된 로터에서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하는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600kg ↑
	비행선		공기보다 가벼운 엔진으로 구동하되 방향 조종이 가능한 항공기	자체중량 180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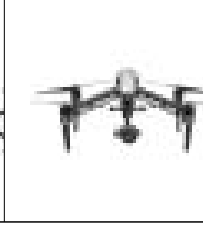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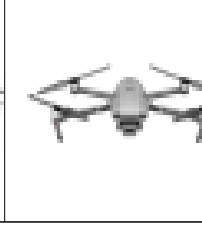
구분	종류(분야)	사진	개념	무게
	활공기		엔진보다 자유비행에서 얻는 양력으로 비행하는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	자체중량 70kg ↑
	무인항공기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비행기(항공안전법 §2제6호)	·비행기·헬리콥터형: 자체중량 150kg ↑ ·비행선형: 자중 180kg ↑
경량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비행기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하여 비행 중 양력을 얻는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600kg ↓
	헬리콥터		항공기보다 좌석, 속도, 추진방식, 무게 등이 작은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시동은 엔진, 비행 시 양력은 로터, 추진력은 프로펠러에서 얻는 회전익항공기	
	동력패러슈트		패러글라이더에 엔진과 조종석을 장착한 동체(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고 좌석·무게가 요건에 부합하는 고정익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1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행글라이더		체중이동 또는 날개를 조종(타면조종)하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2호)	자체중량 70kg ↓ (비상용구 제외)
	패러글라이더		발로 이착륙하는 조종자가 탑승하는 날개에 연결된 하네스로 구성된 초경량비행장치	자체중량 70kg ↓ (비상용구 제외)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4호)	-
	무인동력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5호 가목)	자체중량 150kg ↓ (연료제외)
	무인비행선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무인비행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5호 나목)	자체중량 180kg ↓
	회전익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6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동력비행장치를 갖춘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7호)	자체중량 115kg ↓ (연료, 비상용구 제외)
	낙하산류		항력을 통해 낙하하는 사람(물체)의 속도를 늦추는 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5제8호)	-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 드론법 제2조제1호 가·나목에 해당. 다목은 향후 개발될 비행체(예: eVTOL, 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정의

자료: 국토교통부

드론의 기체형태와 무게별로 살펴본 드론의 세부종류는 다음과 같음.

【 드론의 종류 】

기체 형태별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무게별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EW 150kg 초과	MTOW 25kg 초과~ EW 150kg 이하	MTOW 7kg 초과~ MTOW 25kg 이하	MTOW 2kg 초과~ MTOW 7kg 이하	MTOW 250g 초과~ MTOW 2kg 이하
					

* MTOW(Maximum Takeoff Weight, 최대이륙중량), EW(Empty Weight, 자체중량)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이처럼 드론에 대한 정의를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에서 인용하는 형식으로 규율하는 과정에서 동 제정안에 따른 법률과 기존 법률 간의 상충 또는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바로 다음에서 정의되는 드론사고의 경우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와 중복·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 제18조는 무인비행장치 신고를 규율하고 있는데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되므로 동법 제122조에 따른 초

경량비행장치 신고와 중복·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드론사고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¹⁸⁾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드론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①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②드론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③드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드론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④드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산피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됨.

드론사고는 안 제6조 드론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안 제11조 드론사고 발생 시의 사고보고, 안 제13조 드론사고 발생 시 사실조사와 관련되어 있음.

드론사고의 정의는 「항공안전법」의 “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경우 중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18)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계장치(엔진 등)를 의미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에서 발동기를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로 규정하고 있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 드론 관련 사고에 관한 현행 규정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안 제2조제2호에서 “드론사고”의 시점은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드론 중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기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분야내 사고의 범위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사고 정의를 준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는 ‘비행을 목적으로 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하는 순간까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드론사고”에 해당하나, 무인비행 장치의 사고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해당되는 사고는 안 제2조제2호의 “드론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는 등 앞서 ‘드론’의 정의에 대한 검토에서 서술하였듯이 드론에 대한 정의를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에서 인용하는 형식으로 규율하는 과정에서 동 제정안에 따른 법률과 기존 법률 간의 상충 또는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 또는 비행장치의 파손 또는 손상, 항공기 또는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고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반면,

“드론사고”는 ‘드론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산피해’까지 드론사고로 규정하여 그 범위가 현행법보다 확대되었음.

이에 드론 조종자 또는 드론소유자등은 안 제11조에 따라 인명피해나 장치의 손상, 장치의 위치 확인이 불가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드론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함. 또한, 안 제12조 안전자율보고의 대상과 안 제13조 사실조사의 대상도 확대되는 법적 효과가 나타남.

현행 법령하에서는 인명피해와 관련한 사고에 한하여 사고조사가 실시되는 한계가 있고,

안 제17조에서 재산·인명 보호를 위한 비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드론 비행규칙에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 제21조에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게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드론사고에 재산피해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③드론안전위해요인은 「항공안전법」의 “항공안전위해요인”과 유사함. 드론안전위해요인은 가령 특정지역에서 조종기와 드론간 통신이 지속적으로 두절되는 경우, 유류저장소 등 위험지역 인근에서 드론의 비행이 있는 경우,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드론안전위해요인 관련 사항도 사고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드론 사고보고 제도 하의 보고대상에 해당하며, 미국(NASA), 유럽(EASA) 등 항공선진국에서도 드론 사고보고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설명임.

다만,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뜻하는 “위험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위험도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음.

【 항공안전위해요인에 관한 현행 규정 】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

「항공안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⁹⁾

드론 중 무인항공기와 관련하여 위험도의 정의나 관련 규정을 제정안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19) 「항공안전법」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 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기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만 해당한다]

④드론사용사업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그 밖에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드론사용사업자에 관한 현행 규정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2. 그 밖에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⑤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과 ⑥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항공사업법」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정의에서 장치의 범위를 무인비행장치로 한정 한 것임.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에 관한 현행 규정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제정안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 순으로 그 범위가 좁아지는 체계임.

이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사용사업자의 범위를 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에서 변화하는 점은 없으나, 드론사용사업의 범위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임.

⑦ 마지막으로, 안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리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조제1항에서 드론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정의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정리하고 있음.²⁰⁾

안 제7조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제정안의 내용 중 안 제2조에서 정의되지 않았으나 타 법에서 정의된 용어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활용 분야 확산에 따라 자연증가가 예상되는 사고의 정의를 드론의 특성에 맞게 명확히 정의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나, 무인항공기 등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율대상을 중소형드론으로 한정하고, 관련한 사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 외의 다른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다른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방식²¹⁾임.

드론의 정의가 현행법령에서 유지되므로, 제정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제정안이 드론의 안전과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경우 제정안이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21)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법제실, 2019, 274쪽.

라. 군용드론 등의 적용 특례(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군용드론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 드론과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용 또는 경찰용 드론과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9조, 제17조, 「항공안전법」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안 제4조(군용드론 등의 적용특례)는 군용 드론, 세관용 또는 경찰용 드론에 대해서는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군용 드론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는 없음. 다만, 「항공안전법」 제3조에서는 국가기관등항공기에서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²²⁾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군용항공기”의 정의를 마련하거나,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 약칭 및 그 범위를 마련한 입법례가 있음.²³⁾

22)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1) 비행기

2) 회전익항공기

3) 비행선

「항공안전법」 제3조에서는 군용항공기와 그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이와 유사하게 안 제4조에서는 「항공안전법」 제3조과 같이 세관용 또는 경찰용 드론과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중 충돌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9조, 제17조, 「항공안전법」 제79조 및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음.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제2조의2(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법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및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24)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참고로, 제51조는 무선설비의 설치·운용의무, 제67조는 항공기의 비행규칙, 안 제68조제5호는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한 사항임.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무인항공기의 비행

제정안

제9조(무선설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별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드론 비행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의 안전한 운영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비행규칙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가시권(VLOS) 비행에 관한 규칙
3. 비가시권(BVLOS) 비행에 관한 규칙
4. 군집비행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드론 비행규칙을 정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67조에 따른 항공기 비행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드론조종자 또는 드론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드론 비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이륙·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안 제4조제2항단서는 군, 세관, 경찰용 드론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적용특례를 부여하되, 민간지역에서도 드론을 운용하는 세관, 경찰은 기존 비행규칙에 따라 운항하는 타 비행체와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안의 내용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규율 대상을 무인항공기를 제외한 중소형 드론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비행목적(군·세관·경찰용) 및 적용

대상(중소형드론에 한정)을 감안하여 단서와 같이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정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마. 국가기관 등 드론의 적용 특례(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국가기관등 드론의 적용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계약 등에 의한 임무 대행 사업자를 포함한다)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행 중 발생한 사고를 제11조에 따라 보고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안 제5조(국가기관등 드론의 적용특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드론을 수색·구조 등 공공복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안 제20조제4항),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20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④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야간 비행
2.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제21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와 유사한 구조임.²⁵⁾ 안 제5조는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의 긴급한 비행에서 승인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관계된 기관이 많은 경우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25)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9조제3항을 이 조 제2항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다음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안)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3.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자회사 1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제5조제1항에서는 ‘임무 대행 사업자’의 표현이 규정되어 있음. 이는 국가기관등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의 비행’을 계약을 통해 대신 수행하는 민간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명확성의 원칙 상 이러한 의미를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만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것은 특례를 적용할 때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완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적용특례에 따라 비행 중 발생한 사고를 안 제11조 사고보고 규정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적용특례를 받은 비행일지라도 드론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는 보고와 사고 대처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항공안전법」 제4조제3항의 경우도 유사한 구조임.²⁶⁾

다만, 안 제5조제2항 ‘제1항에 따라 비행 중 발생한 사고’는 ‘제1항에 따라 비행하는 중 발생한 드론사고’로 자구를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서 긴급비행의

26) 「항공안전법」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③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 항공기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범위로 ‘화재의 진화·예방’을 포함하고 있어, 법령 통일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목적의 긴급비행 예시를 “진화·예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바. 드론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드론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드론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드론 관리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드론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3. 드론의 제작·정비 및 안전성 관련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4. 드론 조종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안 제6조(드론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관리정책, 드론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드론 인증체계 관련 사항, 드론 조종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드론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제6조27)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정책기본

27) 「항공안전법」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4. 비행정보구역·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는 동 규정에서 드론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드론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동 규정의 체계는 「항공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체계와 유사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드론에 관한 사항을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 다루고 있으나 실제 드론 관련 내용은 30개 추진과제 중 1개로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는바, 해당 계획에는 드론 관리정책 목표 및 전략, 사고 예방 및 운항안전, 제작·정비·안전성인증 체계, 조종자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드론관리기본계획을 통하여 드론 관리정책 등 제정안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계획 수립 시 드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드론의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안전성 인증 개선, 안전운용기술 개발 등 드론 생애주기별 안전수준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동 제정안에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드론 관리기본계획 별도 수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현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있으므로 중복 우려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드론 조종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으나, 동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조종자에 대한 규정이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부분에서 명시되어 있는바,²⁸⁾ 동 규정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 조종을 위하여 증명을 발급받았을 경우를 규정하면서 조종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임.

이러한 현행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드론 조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로, 안 제17조제3항에서 ‘드론 조종자 또는

28)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 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드론소유자등'의 개념을 쓰고 있으며, 이때 드론소유자등은 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소유하면서 비행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개념임.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법」 제81조 등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공역관리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²⁹⁾

29) 「항공안전법」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드론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드론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연구 3. 드론의 안전기술, 운영·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드론의 조종, 성능평가·인증, 안전관리, 정비·수리·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드론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드론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드론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8.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7조(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는 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사업 추진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³⁰⁾와 유사한 규정임.

30) 「항공사업법」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인증, 안전관리, 정비·수리·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재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 및 인프라 운영 등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8항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드론 인증 기술 개발 및 인증인프라 구축을 위해 ‘드론 인증센터 구축(3637-328)’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무인항공 전체에 대한 안전증진 및 활성화는 현행 「항공사업법」 제 69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 필요 시에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드론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안 제7조 각 호의 사업은 「드론법」, 「항공사업법」 등의 규정과 중복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규율한다면 안 제7조에서 드론산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드론산업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뜻

하는 것으로 이해됨.

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율하려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드론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거나, 드론산업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드론산업을 뜻한다는 점을 본문에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는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정의규정에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아. 드론기술기준(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드론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드론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드론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 및 제124조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1. 드론의 안전성 기준 2. 드론의 통신기술 기준 3. 드론의 무선설비 등을 위한 기준 4. 그 밖에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안 제8조(드론기술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의 안전성, 통신기술, 무선설비 등, 비행안전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항공안전법」 제19조와 유사한 규정으로,³¹⁾ 안 제8조의 각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기 체	통신기술기준	무선설비 등 기준
기본 사양 및 운용관련 기술 기준	지상통제소(GCS)와의 양방향통신관련 기술기준	드론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안전성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재 실증이 진행 중인 비가시권·자동비행이 가능한 드

31) 「항공안전법」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3. 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4.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5.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각 기준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는 설명인바,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한편, 안 제8조제4호는 드론 기술 고도화, 드론교통관리체계(UTM) 구축 실증 등에 관한 R&D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를 제도에 적시 반영하여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는바, 이 역시 타당하다고 보임.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드론 비행과 운용을 위한 기술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체의 결함 등 기술적 요인에 따른 사고 감소 등이 기대되나, 비행 안전을 위한 통신·무선설비 등은 「전파법」의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무선설비에 대한 통일적 기술기준 적용을 위하여 무선설비 등의 기준이 「전파법」³²⁾에 부합할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용대상에서 무인항공기를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우 항공기기술기준(「항공안전법」 제19조) 적용을 제외하고, 제정안에서 안전성 인증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

32)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준용을 제외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시설물 관리, 영상 촬영, 드론라이트쇼 등 드론 활용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드론 충돌, 낙하, 베임 등 안전사고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설계 및 제작 시 조종자와 드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제도가 부족하므로, 드론의 위험관리기준을 드론기술기준에 포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안 제8조 제1호 드론의 안전성 기준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자. 무선설비 등(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무선설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별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다.

안 제9조(무선설비 등)은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드론에 장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드론의 식별정보(위치, 속도, 고유 식별번호 등)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 장착하거나, 식별정보 전송 기능을 드론 내부(메인보드 등)에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인항공기의 경우 사고·조난에 대비한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드론 운영환경의 다양성 및 관련 기술 발달로 드론의 운영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안전한 비행을 위해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현재에도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불법비행이 증가하여 항공기 회항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드론 조종자 등 파악이 어려워 제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드론 조종자 등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무선설비 장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차. 안전 활동(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드론 제작 또는 정비 등을 하는 자
2. 드론사용사업자
3.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드론소유자등”이라 한다)
4.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5.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전문교관
6. 그 밖에 드론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4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드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드론안전에 관한 전문가(이하 “드론안전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2. 이착륙장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3. 드론 보관장소
4. 그 밖의 필요한 장소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드론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드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안 제10조(안전 활동)는 드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작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드론안전전문가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점검 결과 드론 안전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드론 운용 또는 드론 조종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임.

이는 「항공안전법」 제132조의 내용과 유사한 것임.

【 현행 항공안전 활동 관련 규정 】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하는 자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5.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항공기로 유상운송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 6의2. 항공전문의사
7.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3.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정비장
4.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먼저, 안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제2호의 드론사용사업자는 유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 한편, 안 제10조제3호의 드론소유자 등은 드론 구입 후 「항공안전법」 제122조³³⁾에 따라 기체신고를 한 자

33)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

임. 또한, 드론소유자등 중 드론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소유자 외 임대 등을 통하여 드론 기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드론사용사업자와 구별되는 개념임.

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는 드론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만 업무 보고 또는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인항공기, 수직이착륙기 등 타 드론의 조종자에 대하여도 업무 보고 또는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무인비행장치로만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임.

참고로,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서도 무인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등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안전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다음, 안 제10조제2항에서 드론안전전문가의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약칭이 제10조 이하에서 쓰이고 있지 않으므로 약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안 제10조제2항제4호에서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규정하여 사실상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어떠한 장소든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 각 호에서는 장소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출입·검사 규정은 제재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소적 범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카. 사고보고(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사고보고) 드론 조종자는 드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드론소유자등이 드론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11조(사고보고)는 드론 조종자가 드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보고제도는 항공종사자들이 항공운항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항공종사자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전파하는 방법으로 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제도로, 의무보고와 자율보고가 있음³⁴⁾

【 항공안전 의무보고 제도개요 】

구 분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 자율보고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항공안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
보고사항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2) 법 제2조제9호,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3) 법 제2조제10호, 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상황·상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실

34) 박진서·김제철·심가람, 항공분야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2014), 40쪽.

구 분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 자율보고
보고 대상자	1) 항공기사고·항공기준 사고·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가)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 나)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다)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 라) 공항시설을 관리·유지하는 자 마) 항행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바) 위험물 취급자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항공기탑승·공항이용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등 전 국민)
보고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출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국토교통부고시)」

「항공안전법」에서는 사고보고 대상을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사고보고 대상을 드론사고로 한정하고 있음.

【 항공기사고와 드론사고 관련 보고규정 비교 】

구분	항공기사고 등	드론사고
의무보고 대상 근거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제9호, 제10호	제정안 제2조제2호

드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보고를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미국 NASA, 유럽 EASA)에서도 드론사고 보고를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드론사고 접수, 원

인 등의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지표로 관리 중인바, 드론사고 보고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안 제11조(사고보고)는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의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항의 내용과 동일하며, 「항공안전법」의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보고 제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그런데,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³⁵⁾은 보고 내용의 공개 금지 및 보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35) 「항공안전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금지를 규정하여 보고자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제정안과 「항공안전법」에 따른 정의를 고려할 때, 드론사고 중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항공안전법」상 항공기사고³⁶⁾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초경량비행장치 사고³⁷⁾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중복 또는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요 드론 사고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음.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36)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7)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요 드론 사고
○ 2009. 8. 3. 전북 임실 오수농협 무인헬기 사망사고 (조종자 사망)
○ 2015. 7. 14. 경남 합천 농업용 무인헬기 추락 후 화재
○ 2019. 4. 2. 대전 무인멀티콥터 추락 (3인 경상)
○ 2023. 8. 12. 부산 광안리 드론 라이트쇼 중 무인멀티콥터 추락 (2인 경상)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³⁸⁾ 이에 따라 안 제47조제5항제1호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38)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타. 안전자율보고(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안전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사고보고 대상 외의 드론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드론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드론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드론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안전자율보고)는 드론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안전자율보고)는 「항공안전법」 제61조의 체계와 유사하게 제정안에서 신설되는 내용임. 현행법 상 「항공안전법」 제61조에 따라 드론 중 무인항공기만 자율보고가 가능하며, 무인비행장치는 자율보고제도가 없음.

안 제12조(안전자율보고)는 「항공안전법」 제61조제1항의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항의 내용과 보고대상 외에는 동일하며, 「항공안전법」의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항공안전법」

-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공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와 같이 드론 자율보고 제도를 비밀보고로 운영하고 누구든지 보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끔 하여 보고내용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며, 자율보고 활성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등을 실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³⁹⁾

참고로 「항공안전법」은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위반하여 항공

3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ANNEX 19 - Safety Management)에서도 해당 사항을 법 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ANNEX 19 – Safety Management
5.3 Safety data and safety information protection Note 1.— A reporting environment where employees and operational personnel may trust that their actions or omissions that are commensurate with their training and experience will not be punished is fundamental to safety reporting.
6. Protection of recorded data 6.1 States shall, throug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specific measures of protection regarding the confidentiality and access by the public to ambient workplace recordings.

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⁴⁰⁾,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보고에는 자율보고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없으며, 제정안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드론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드론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련된 제정안 및 현행법령 상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 제3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 제38조(과징금 부과) · 제43조(무인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제44조(검사 거부 등의 죄) · 제45조(무인비행장치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제47조(과태료)	·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 제148조의2(항공안전 의무 보고에 관한 죄) ·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제166조(과태료)	· 제59조(과징금의 부과) ·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 제69조(과태료)

자료: 국토교통부

40) 「항공안전법」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사실조사(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드론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안 제13조(사실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사고 보고를 받거나 드론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항공안전법」 제60조와 동일한 내용임.

「항공안전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종사자 대상 특별안전교육 및 사업자 안전 컨설팅 등 사고예방정책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하. 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 드론소유자등 또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항공안전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안 제14조(주류 등의 섭취·사용제한)은 드론소유자등에 대한 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을 규정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제57조에서는 항공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류 등의 섭취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을 제한하여, 조종자의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동법 제131조에서 제57조를 준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 대해 주류 등의 사용·섭취를 제한하고 있음.

「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드론도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은 추락 등으로 인한 제3자 또는 타 항공기 등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드론 조종자도 항공종사자에 속하므로 기존 항공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령에서는 드론의 소유자까지 주류 사용·섭취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여 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안 제43조제1항 참조),

드론 소유자가 드론 조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해당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류 사용·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드론 안전에 관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자구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동 제정안에서 “주류등”이라는 용

어를 별도의 약칭 없이 사용하고 있어 법 적용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항공안전법」 제57조와 같이 주류등에 대한 약칭을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류 등의 섭취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을 제한하여 조종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드론소유자등의 범주에 조종자 외에 소유자도 포함되므로 제한대상에서 소유자는 제외하고 조종자 및 조종교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거. 드론보험 등의 가입의무(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드론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드론을 드론사용사업에 사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드론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안 제15조(드론보험 등의 가입의무)는 드론 소유기관 또는 드론사용사업에 드론을 사용하려는 자는 드론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항공사업법」 제70조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임.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다음 각 호의 항공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기대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외의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③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소유자들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안 제15조의 드론보험 가입의무자는 영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자인데, 비사업용 드론의 대부분은 완구용으로 그 위험성이 낮고, 보험가입 의무화로 동호회 등 드론레저 산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의무를 영리 목적의 드론에 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 보상 등을 감안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소형 드론을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스트리밍 서비스 등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도 보험 가입을 광범위하게 강제하는 것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보험가입을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상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업에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무게에 관계없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그 취지가 사업자로 하여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드론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10개사로 파악되며,⁴¹⁾ 2023년 12월 기준 드론보험 계약건수 (가입자 수)는 10,609건임.

또한, 드론보험협약체⁴²⁾를 통해 드론보험표준약관이 적용된 ‘드론배상책임보험’을 ’23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외에 농기계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을 통해 드론 사고에 대한 배상 (대인 1.5억 이상, 대물 2천만원 이상, 특약 가입 등)을 담보하고 있음.

41) 한화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농협손보, MG손보, 흥국화재

42) 드론 보험 활성화 및 다양화, 표준약관개발 등을 위한 민·관 협업체제로 국토교통부 및 10개 보험사 등으로 구성

너. 드론 안전성 관련 인증(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드론 안전성 관련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의 안전성 관련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관련 인증은 「항공안전법」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24조에서 정하는 인증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성 관련 인증을 받고 비행하여야 한다.

안 제16조(드론 안전성 관련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드론의 안전성 관련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및 제124조는 항공기의 형식증명 등에 관한 사항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증절차와 방법을 제정안에 명시함으로써 드론 관련 인증제도를 국민이 찾아보기 쉽게 한다는 의의가 있음.

「항공안전법」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2.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

제22조(제작증명)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감항승인)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 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

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감항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騒音値)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가 제19조제2호의 소음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소음기준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수리·개조승인) ①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더. 드론 비행규칙(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드론 비행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의 안전한 운영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비행규칙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가시권(VLOS) 비행에 관한 규칙 3. 비가시권(BVLOS) 비행에 관한 규칙 4. 군집비행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드론 비행규칙을 정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67조에 따른 항공기 비행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드론조종자 또는 드론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드론 비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 제17조(드론 비행규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절차, 가시권 등 비행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항공안전법」 제67조의 내용과 유사한 것임.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제출·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기존 드론 비행은 조종사 시야 내에서 직접 조종·비행하는 방식이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원격조종 등 비행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이에 드론 비행규칙을 제정하여 표준화된 규칙에 따른 비행을 하도록 하여 인명·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안 제17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관련 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은 각각 비행에 요구되는 구성요소, 기체 및 장비의 성능 요구조건 및 비행방식이 달라 동일한 비행규칙으로 운용이 어렵다는 설명인바, 각각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가시권 비행 등의 개념 구별 】

가시권 비행	비가시권 비행	군집비행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종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종 * 모니터 등 시각보조장비 활용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동기화된 다수의 드론들이 군집을 형성하여 하나의 미션 수행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가시권 비행, 비가시권 비행 등의 용어가 법률에서 사용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바, 수범자의 이해를 위하여 이를 풀어 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행규칙은 안전한 운영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규정임을 감안하여 재량규정이 아닌 당연히 비행규칙을 마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동 제정안의 목적이

새로운 기체인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러. 무인비행장치 신고 및 비행승인 등(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

제 정 안

제18조(무인비행장치 신고) ①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번호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은 해당 무인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비행 시 신고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9조(무인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무인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⑥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린 후에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해당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관제구역 · 통제구역 · 주의구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정 안

④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야간 비행
2.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제21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무인비행장치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무인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업무(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인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5.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6.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드론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준 경우
10.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경우
11.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12. 이 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 기간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제 정 안

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는 「항공안전법」 내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인용하여 신설한 조문임.

다만,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정으로 규율하는 반면, 제정안에서는 무인비행장치 관련 규정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켰음. 현행법과 제정안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제3장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종사자 등	
제18조(무인비행장치 신고)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9조(무인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20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및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23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25조(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 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97호,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항공안전법」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들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들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들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들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⑥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들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들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⑦ 제6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들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구역·통제구역·주의구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1. 12.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2021. 5. 18.>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안 제18조는 무인비행장치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항공안전법」 제

122조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중 무인비행장치만을 이관한 것임.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에서 ‘중소형드론’으로 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기체신고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신고증명의 유효기간 제도가 미비한 현 상황으로 인해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말소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 미국, 일본, 호주 등은 3년 내지는 1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사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드론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20조는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규정임.

동 규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이 어떠한 구역인지는 지칭이 없음.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항⁴³⁾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을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3)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도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항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초경량비행장치 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함.⁴⁴⁾

안 제20조제2항제2호에서는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⁴⁵⁾ 등의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고로 공역의 구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공역의 구분 】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 ⁴⁶⁾	내 용
관제공역	A~E 등급 구분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F~G 등급 구분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주의공역	-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44) 즉,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함.

참고로, 비행가능 공역,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참고2), V월드(<http://map.vworld.kr/map/ws3dmap.do>)(참고2) 지도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함.

45)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임. 수평범위는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5NM, 수직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임.

【 공역 관련 현행 규정 】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 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수색·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관리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지정절차,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6) 우리나라는 비행정보구역(FIR)을 여러 공역으로 등급화하여 설정하고, 각 공역 등급별 비행 규칙,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한 항공기 요건 등을 정함. 공역은 크게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과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2가지로 나뉨

우리나라 공역의 등급 구분은 A, B, C, D, E, F, G등급(7개)이며, 각 등급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 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목적으로 함(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atmo/USR/WPGE0201/m_37007/DTL.jsp).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⁴⁷⁾은 단서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동 단서는 비행장·이착륙장 주변의 경우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⁴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비행이 불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제정안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20조제3항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비행하려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제한구역에서의 비행(제1항)과 일정 고도 이상에서의 비행(제2항제1호), 일정 구역에서의 비행(제2항제2호) 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항공안전법」 제127조제4항⁴⁹⁾은 일정 고도 이상에서의 비행

47)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48)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49)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

(제2항제1호)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등의 비행인 경우에도 통보만으로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그 취지가 항공 안전의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25조(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는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것으로, 현행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를 대상을 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하여 이관한 조항임.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제재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구역·통제구역·주의구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며.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안 제24조)

제 정 안
제24조(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무인비행장치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연습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외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연습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이하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하며,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종교육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하거나 보고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경우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4. 이 조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교육을 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24조(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은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 자격의 취득요건 및 자격관리 제도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법령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은 만 18세 이상 조종자로 1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종 기체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일정한 교육 및 시험을 치러야 교관이 될 수 있음.⁵⁰⁾

50)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교육 및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관은 지도조종자(조종교육 담당), 실기평가조종자(실기평가 담당)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훈련 과정의 내용·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구분	취득요건	역할
지도조종자	· 조종자증명 보유	· 조종교육

그러나 이러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의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운영 중인데, 제정안에 따라 교관의 조종 교육능력에 관한 국가 자격 증명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격취득 과정의 부정을 방지하고, 적절한 조종능력의 배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도를 규정⁵¹⁾하고 있으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음.

다만, 2023년 말 기준 민간자격을 취득한 교관이 17,000명 이상에 달하는데, 민간자격이 제정안에 따라 국가자격이 되는바, 기존 교관들의

구분	취득요건	역할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집체교육(2박3일) - 학과시험 합격	전문교육기관 설립요건 (1명 이상)
실기평가조종자	- 지도조종자 보유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집체교육(1일), 실기평가 합격	- 조종교육 및 실기평가 - 전문교육기관 설립요건 (1명 이상)

51)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기(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 ② 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이라 한다)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하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12조 및 제114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 현황(2023년 기준) 】

구 분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계
지도조종자	145	243	15,164	14	15,566
실기평가조종자	10	29	1,476	1	1,516
계	155	272	16,640	15	17,082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기존 체계와 달리 지도조종자에 대하여 실기평가를 추가하고, 정기보수교육(2년 단위)을 도입할 예정으로, 교육 이수 시 자격을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중소형드론 교관 개선방안(안) 】

구분	현행	향후
지도조종자 (조종교육 담당)	- 조종자증명 보유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집체교육(2박3일) - 학과시험 <u>보수교육 없음</u>	⇒ - 조종자증명 보유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집체교육(2박3일) - 학과시험 + <u>실기평가</u> <u>보수교육</u>(매 2년)
실기평가조종자 (조종교육 + 실기평가 담당)	- 지도조종자 보유 - 비행경력 150시간 보유 - 집체교육(1일) - 실기평가 <u>보수교육 없음</u>	⇒ - 지도조종자 보유 - 비행경력 150시간 보유 - 집체교육(1일) - 실기평가 <u>보수교육</u>(매 2년)

한편, 조종교육증명을 도입하는 경우 조종자 증명과 같이 대여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조종교육증명 취소 등 제재 사유와 관련하여 조종자 증명 제재사유 참고 시 ①조종교육을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소형드론 사고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함에 있어 비행규칙·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교육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⑤교육업무 시 주류 등 섭취·사용한 경우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조종교육증명 취소 등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 부령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버.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명의대여 금지 등(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제 정 안

제2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제3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8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제29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양수)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수인이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36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36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제31조(법인의 합병) ① 법인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다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 또는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제32조(상속)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은 피상속인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33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폐업) 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이후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으로 드론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35조(서류 등의 비치)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등록증, 보험가입신고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29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신고서 및 보험가입서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7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무인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 무인비행장치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4.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 제거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는 「항공사업법」 내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명의대여 금지, 사용사업의 양도·양수 등 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인용하여 신설한 조문임.

안 제2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서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항공사업법」 제30조 및 제48조에서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맞춘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임. 등록의 요건 역시 「항공사업법」 제48조제2항과 동일함.

다만, 안 제27조에서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26조제3항에서 중복적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안 제27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의 경우 등록을 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므로 그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조 제1호는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⁵²⁾ 각 호의 자(외국인, 외국법인 등)를 결격사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보의 관점에서 외국인 등을 사업자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 항공기와 달리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드론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외국인 등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2) 「항공안전법」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도 「항공사업법」 제49조 등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춘 것으로 제정안과 내용상 큰 차이점은 없음.

다만, 「항공사업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정으로 규율하는 반면, 제정안에서는 무인비행장치 관련 규정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켰음.

현행법과 제정안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제4장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	
제2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등)	항공사업법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27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	항공사업법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28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계획의 변경 등)	항공사업법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29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항공사업법 제3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30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양수)	항공사업법 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제31조(법인의 합병)	항공사업법 제35조 (법인의 합병)
제32조(상속)	항공사업법 제36조 (상속)
제33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항공사업법 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제34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폐업)	항공사업법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제35조(서류 등의 비치)	항공사업법 제62조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3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항공사업법 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37조(개선 명령)	항공사업법 제39조 (사업개선 명령)
제38조(과징금 부과)	항공사업법 제41조 (과징금 부과)

이에 따라 「항공사업법」 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91호,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항공사업법」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 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③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제35조(법인의 합병) ① 법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제36조(상속)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은 피상속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항공기사용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이후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으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39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4.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8.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8.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3. 「항공안전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14.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9조제8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 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 ⑦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 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 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
-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④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 운임표
 2. 요금표
 3. 운송약관
 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서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⑦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9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안 제35조(서류 등의 비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제재조항⁵³⁾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53) 안 제3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1.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신고서 및 보험가입서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때 어떤 서류들을 비치하여야 하는지와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항공사업법」 제62조⁵⁴⁾와 같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7조(개선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사항 중 하나로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드론 중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중소형드론으로 한정하는 경우 중소형드론은 국가별 여건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배송 활성화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업종 신설 등 사업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어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중소형드론사용운송사업’으로 수정하고, 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에 산재된 중소형드론 관련 정비·대여사업을 별도로 분리·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제35조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서류 등을 갖추어 둔 자
54)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④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 운임표
2. 요금표
3. 운송약관
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서. 보칙(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 정 안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3. 제25조제7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증명·면허·허가·인가·승인·인증·등록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면허증·증명서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면허·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는 보칙으로서,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수수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안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는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의 내용과 동일하며, 안 제40조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상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현행법과 제정안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제5장 보칙	
제39조(청문)	항공안전법 제134조 및 항공사업법 제74조(청문)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드론법 제21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41조(수수료 등)	항공안전법 제136조 및 항공사업법 제72조 수수료 등)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공안전법 제137조 및 항공사업법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칙 관련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공사업법」 제7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제75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면허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3. 제4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 4. 제4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 5. 제4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 6. 제4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7. 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의 취소 8.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영업소 폐쇄 9. 제53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 폐쇄 10. 제5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11. 제6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1.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항공안전법」
--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2. 제21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4. 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감항승인의 취소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7.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취소
8. 제28조제5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 8의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0. 제4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11.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 11의2. 제47조의2에 따른 연습허가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2. 제48조의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같은 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63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정의 취소
15. 제71조제5항에 따른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16. 제72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7. 제86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18. 제91조제1항 또는 제95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20.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취소
21. 제1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22.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23. 제117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4.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25. 제126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6. 9.>

1. 이 법에 따른 증명·승인·인증·등록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증명서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41조(수수료 등) 규정에서 제1항제1호에서는 “검사등”의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 제41조제2항 외에는 해당 약칭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표현을 ‘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탁 업무 중 면허·인가 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42조(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 중 안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 의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40조제2항에서는 드론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드론 관련 전문검사기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는 무인비행장치 활용범위 확장과 활용도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급증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법정 권한·업무 등이 부재하여 업무 확장, 규율위반 제재 등에 제한적인바, 관련 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에 위임하여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과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체신고, 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드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과 드론에 대한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됨에 따라 통일적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행정 효율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 벌칙(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제 정 안
제43조(무인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3. 제14조에서 준용하는 「항공안전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6조에 따른 드론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관련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사람 2. 제2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황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제44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무인비행장치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9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 ② 제37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드론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관련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43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4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35조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서류 등을 갖추어 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제43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무인비

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43조제4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④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무인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인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인비행장치소유자등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는 벌칙으로서, 무인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를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려는 것임.

해당 규정들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상 현행 벌칙 규정과 내용 및 법정형이 동일함.

현행법과 제정안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제6장 벌 칙	
제43조(무인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44조(검사 거부 등의 죄)	항공안전법 제163조 (검사 거부 등의 죄)
제45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사업법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및 항공안전법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6장 벌 칙	
제46조(양벌규정)	항공사업법 제82조 (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	항공사업법 제84조 및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항공안전법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벌칙 관련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공사업법」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10.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4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22.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43조부터 안 제45조까지의 법정형은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각 조항에서 법정형이 동일한 규정은 체계자구 상 동일 조문의 항으로 합쳐 신설하고 법정형의 수준에 따라 조문 순서를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주류 등의 섭취·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시 벌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45조(무인비행장치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내용은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이므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안 제9조(무선설비 등)⁵⁵⁾에 따른 무선설비 장착·운용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안 제10조(안전활동)⁵⁶⁾를 위반한 자(①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②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③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④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미흡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5) **안 제9조(무선설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별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다.

56) **안 제10조(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드론 제작 또는 정비 등을 하는 자
2. 드론사용사업자
3.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드론소유자등”이라 한다)
4.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5.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전문교관
6. 그 밖에 드론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4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드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드론안전에 관한 전문가(이하 “드론안전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2. 이착륙장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3. 드론 보관장소
4. 그 밖의 필요한 장소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드론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드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항공안전법」 제165조⁵⁷⁾는 중복 제재에 따른 과잉처벌을 방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 제재가 가해지도록 벌칙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도 이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7)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저. 부칙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성 관련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2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번호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비행승인을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조종자 증명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으로 본다.

제7조(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안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교육기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제9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른다.

제11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휴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다.

제14조(드론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안전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중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계획은 이 법 제6조에 따른 드론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항공사업법」”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비행승인
5.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안 부칙 제1조(시행일)은 제정안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및 관계기관의 행정 준비사항을 갖추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안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처분, 드론의 안전성 인증,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조종교육증명,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사용사업의 등록·휴업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드론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구법의 효력 일부를 신법인 제정안의 시행일 이후까지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제도 운영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운영사항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정책의 지속 및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안 부칙 제7조와 같이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조종 교육증명을 받은 자로 보도록 하되, 기존에 등록된 전문교관에 대하여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도록 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업종 개편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경과조치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드론관리기본계획을 제정안(제6조)에 따라 규율한다면 안 부칙 제14조와 같이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중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도 타당하다고 보임.

안 부칙 제15조의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15조에 따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3.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비행승인 5.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항공사업법」 상 용어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있는데, 안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드론사용사업자,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어 해당 용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임.⁵⁸⁾

58) 안 제2조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사용사업자의 범위를 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르더라도 현행법령에서 변화하는 점은 없음.

또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항공사업법」 상 용어를 사용하는 내용은 규정되지 않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임. 다만, 향후 개정소요를 예상하여 「항공사업법」의 용어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존치하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도 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즉 현재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고,

안 부칙 내용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실제적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제한적인 개정이므로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제정법률의 적용대상을 중소형드론으로 한정하고, 업종을 개편하려는 경우 그에 따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체적 내용의 개정일 것인바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정안의 법률 위반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여 타법 개정사항에 제정안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제141의2호로 신설하는 취지의 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정법률로 조항이 이관되는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도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포함되어 있는바, 제정법률도 별표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0